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제5차 회의 1999.5.29. 3시

회의록은 심포지움 관계로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 5일 비공식회의에서 법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논의될 예정이어서 한국위원회의 그 동안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져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주요 결의사항

1. 도쿄 개최에 찬성한다. 다만 법정활동이 한국사회에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추후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한다.
2. 법정의 관할사항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굳이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조문화하기보다는 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와 법정의 취지를 담은 취지문 형태가 좋을 것이다.
3.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각기 다른 절차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법정에서 같이 다룬다.
3. 국제검사단을 두되 이들은 법정의 준비작업과 긴밀히 결합하여야 하며 현지방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법정개최 전에 한국방문을 추진하고 관련 심포지움 등을 열어 관심을 환기시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들은 법정에서 따로 기소장을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국제검사단은 형사책임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겠지만 피해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국가책임 부분에서는 소송의 주체(원고)가 되며 검사단과 별도로 관련자료 제출 등 나름의 소추활동을 펼 수 있다.
4. 배심제도는 채택하지 않는다.
5. 권력재판은 가능하지만 핵심쟁점인 천황을 피고로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6.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 형벌과 배상에 관하여는 재판부에게 구체적인 양형, 배상액의 산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르기로 한다. 그 동안 일본법정이 내린 배상액이 작은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배상기준 등의 마련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기타의 구제조치에 관하여서도 권고할 수 있다.
7.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요청: 맥두갈은 98년 최종보고서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전시 성노예에 대한 수사진행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법정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고등판무관실의 지원과 결합의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한다.